

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38조제1항제3호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1) 너비 방향

가)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·하·좌·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,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,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

나)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. 다만, 주행빔 전조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

다) 2개의 주행빔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

2) 길이 방향

주행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·간접적으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

나.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행빔 전조등과 변환빔 전조등 간 최외측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다. 관측각도

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·하·좌·우측 각각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라. 조사 방향

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. 다만,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.

마. 작동조건

1)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

2) 변환빔 전조등에서 주행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될 것

3) 주행빔 전조등에서 변환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소등될 것

4) 변환빔 전조등은 주행빔 전조등과 동시에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.

바. 표시장치

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청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

사. 그 밖의 기준

모든 주행빔 전조등의 최대 광도값의 총합은 430,000칸델라 이하일 것

2. 광도는 별표 5의17 제2호 또는 별표 6의3 제2호가목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